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865
----------	-----

제출연월일: 2015. 4. .
제 출 자: 성동구청장

1. 제안이유

- 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공익신고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
- 나. 주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따른 처리 및 공익신고자의 보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 가. 공익신고 관련 용어 정의(안 제2조)
- 나. 공익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공익신고 처리(안 제4조 및 제5조)
- 다.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안 제6조 및 제7조)
- 라.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운영 기준 마련(안 제8조~제15조)
- 마.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안 제16조 및 제17조)
- 바.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지급(안 제18조 및 제19조)
- 사. 민간협력 강화 조치 마련(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조(2011. 9. 30. 시행)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4380호(2014. 8. 14.)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1) 입법예고(2015. 3. 12. ~ 4.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 반영(문구 추가)

- 개선의견: 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 성별 균형 고려 문구 정비

- 반영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업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

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6. “공익신고 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구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

적으로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제8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망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감사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은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법관, 교육자,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④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은 5년간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본인이나 공익신고자등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신고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관계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 등

제16조(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우수기업 대상 지방세 감면 등) ① 구청장은 우수기업 대상으로 관련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세무조사, 소방·환경 등 각종 시설 점검을 유예하는 것을 추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우수기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기타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구청장은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환경조성사업 대상 공익신고 보조금 지급) 구청장은 환경조성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0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① 구청장은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21조(민간협력)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
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4. 전문가 공개 토론회, 관계자 공동연수 개최 등

제22조(표창의 수여)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3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구청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위원회 설치시 발생비용이 1억원 미만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3. 미첨부 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표준 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 성동구 감사담당관 박기원(연락처 2286-5059)

< 관 계 법 규 >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2015. 5. 1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 4. 14 성동구청

나. 회부일자 : 2015. 4. 14

다. 상정일자 : 2015. 4. 23

(제217회 임시회 개최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2. 제안개요

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 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공익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

나. 주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 행위 신고에 따른 처리 및 공익신고자의 보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

3.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 관련 용어 정의(안 제2조)

- 나. 공익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공익신고 처리(안 제4조 및 제5조)
- 다.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안 제6조 및 제7조)
- 라.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운영 기준 마련(안 제8조~제15조)
- 마.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안 제16조 및 제17조)
- 바.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지급(안 제18조 및 제19조)
- 사. 민간협력 강화 조치 마련(안 제2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조(2011. 9. 30. 시행)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4380호(2014. 8. 14.)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15. 3. 12. ~ 4.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 규제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 반영(문구 추가)

- 개선의견: 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 성별 균형 고려 문구 정비

- 반영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5.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 공익신고는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분야에서 부패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며,
- 특히, 공익침해 행위는 기업이나 조직 내에서 이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내부인의 신고를 통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고자의 보호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최근 복잡하고 다양해진 행정환경으로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공익신고는 양심에 따라 사회문제에 대해 고발하는 용기있는 행동으로, 이를 권장하고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정의 실현과 건강한 시민사회 구축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6. 질의 및 답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